

#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일부개정안

## 1. 개정이유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라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배기량 및 가액 기준 완화  
(안 별표2)

- 생계·의료급여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2,000cc 미만으로 완화하고, 차량가액을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
- 생계·의료급여 본인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나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가 불가피한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2,000cc 미만으로 완화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

나. 예산조치 : 2025년 예산에 69억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6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68호, 2024. 8. 1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일부개정고시안

별표 2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타 급여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

구분	승용자동차	승합·화물자동차
생계·의료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배기량 2,000cc 미만으로</u></li> <li>-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li> <li>- <u>본인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u></li> <li>- <u>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u></li> <li>·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한 배기량 2,500cc 미만인 7인승 이상 자동차로서</li> <li>-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li> <li>-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li> <li>·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로서</li> <li>-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li> </ul>

<p>주거· 교육 급여</p>		<p>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 의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서 -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p>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별표2)

현 행			개 정 안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제3조 관련)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제3조 관련)		
8. 기타 급여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			8. 기타 급여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		
구분	승용자동차	승합· 화물자동차	구분	승용자동차	승합· 화물자동차
생계 · 의료 급여	· 배기량 <u>1,600cc</u> 미만 으로	· 배기량 1,000cc 미만 으로	생계 · 의료 급여	· 배기량 <u>2,000cc</u> 미만 으로	· 배기량 1,000cc 미만 으로
	-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u>200만원</u> 미 만인 자동차	-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 만인 자동차		-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u>500만원</u> 미 만인 자동차	-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 만인 자동차
생계 · 의료 급여	- 본인의 질 병, 부상 등 의 사유로 소유가 불 가피한 자 동차	·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 명 이상의 자 녀를 둔 가구 의 구성원이 소유한 자동 차관리법 시 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소 형 이하 승합 자동차로서	생계 · 의료 급여	- 본인의 질 병, 부상 등 의 사유로 소유가 불 가피한 자 동차	·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 명 이상의 자 녀를 둔 가구 의 구성원이 소유한 자동 차관리법 시 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소 형 이하 승합 자동차로서
	- 질병·부상 등으로 거 동이 곤란 한 가구원 을 보호하 기 위하여 소유가 불 가피한 자 동차	-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 량가액이 500 만원 미만인		-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 량가액이 500 만원 미만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한 배기량 2,500cc 미만인 7인승 이상 자동차로서</li> <li>-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li> <li>· 「보험료 경감 고시」 제3조 [별표1]에 따른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한 배기량 2,000cc 미만인 자동차로서</li> <li>-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li> </ul>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한 배기량 2,500cc 미만인 7인승 이상 자동차로서</li> <li>-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li> </ul> <p>&lt;삭 제&gt;</p>	자동차
주거 ·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기량 2,000cc 미만으로</li> <li>- 연식이 10년</li> </ul>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소형	주거 ·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기량 2,000cc 미만으로</li> <li>- 연식이 10년</li> </ul>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소형

급여	<p>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li> <li>-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li> </ul> <p>· 가구원이 6인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한 배기량 2,500cc 미만인 7인승 이상 자동차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li> </ul>	<p>이하 승합·화물 자동차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li> </ul>	급여	<p>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li> <li>-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li> </ul> <p>· 가구원이 6인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한 배기량 2,500cc 미만인 7인승 이상 자동차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li> </ul>	<p>이하 승합·화물 자동차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li> </ul>